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32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손명수·김은혜·최수진
김승수·안상훈·곽규택
김성원·김소희·조승환
김상훈·윤상현·김영환
김태선·이성윤·문진석
복기왕·서천호·문정복
허성무·염태영·윤종균
엄태영·정일영·민홍철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설계·시공·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적자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구조와 건설산업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위험·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우수한 청년 인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약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건설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회는 운영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공제제도는 부재하여 직역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경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건설기술인단체의 공제사업) 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단체(이하 “건설기술인단체”라 한다)는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3. 가입자의 교육·기술인증·경력개발 등 역량개발 사업
4.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건설기술인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건설기술인단체의 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70조의2(건설기술인단체의 공</u> <u>제사업) ① 제69조에 따라 설</u> <u>립된 건설기술인단체(이하 “건</u> <u>설기술인단체”라 한다)는 건설</u> <u>기술인의 생활 안정 및 복리증</u> <u>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u> <u>제사업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u> <u>지급</u> <u>2.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u> <u>사업</u> <u>3. 가입자의 교육·기술인증·</u> <u>경력개발 등 역량개발 사업</u> <u>4.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u> <u>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u> <u>에 부대하는 사업 중 정관으</u> <u>로 정하는 사업</u> <p><u>② 건설기술인단체가 제1항에</u> <u>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u> <u>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u> <u>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u> <u>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u> <u>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p>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건설기술인단체의 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